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331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2201298)	2024.07.0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6.)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김석기의원 (2201900)	2024.07.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6.)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김종양의원 (2205734)	2024.11.20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4.11.2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4.11.26.) 상정/축조심사/의 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 11. 26.)는 위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8.)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선 입법으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5항).
- 나.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 허가 취소로 완화함(안 제 19조제1항제2호).

다. 경비업 법인 허가요건에서 교육장 요건을 제외함(안 제4조제2항 제3호).

※ 경찰청은 제7조제5항의 대통령령을 마련함에 있어 경비원의 과로 방지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경비업무의 허용 범위를 최소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법률 제 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제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생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	②	
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u>장비의 보유</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u>장비의 보유</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⑤	
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		
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u>다만,</u>	
<u><단서 신설></u>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	
	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가 등) ① (생 략)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 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 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 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 비원
- 2.·3. (생략)

있다.

 ③ ~ ⑧ (생 략)
 ③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9조

가 등) ① (현행과 같음)
2
<u>-</u>
- .
· 1. <u>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경비</u>
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
<u>잡·교통유도경비업무</u>
2.·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1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 -- 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한 때
- 3. ~ 8. (생략)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 2. (생략)

<신 설>

(1)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8.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
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u>한 때</u>
<u>i " </u>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